

2024. 1. 25(목). 10:00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 검 토 보 고 서

< 안건명 >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교통위원회  
전 문 위 원

#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제안경위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6일 박경원 의원 등 아홉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2024년 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교통위원회 회부 된 안건임.

## 2.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당현수막의 설치위치에 관한 조례 조항을 삭제하고, 법령체계에 맞는 조례를 운영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정당현수막 게시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 (안 제29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나. 정당현수막 관리 참고 자료: 붙임2

다. 입법예고 결과 (24. 1. 16. ~ 1. 22.) : 의견없음

## 5. 검토의견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1월 12일 시행령과 동시에 공포·시행됨에 따라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이 강화됨. 이에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상위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적용 배제)** ①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개정 2022. 6. 10., 2024. 1. 12.>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5.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6.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7.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8. 정당이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읍·면(「지방자치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동(「지방자치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2개 이내로 설치할 것. 다만, 읍·면·동의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개의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나.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 기간 및 표시·설치 방법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한 자는 표시·설치 기간이 만료한 경우 광고물등을 신속하게 철거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2.>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적용 배제) ① 법 제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장소
-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hose reel)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스프링클러설비등·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송수구가 설치된 곳
-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가 설치된 곳
- 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다목·바목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가 설치된 곳
- 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가 설치된 곳

② 법 제8조 제1항 제8호 다목에 따른 현수막의 규격, 기간 및 표시·설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의 규격은 10제곱미터 이내로 할 것
  2. 현수막의 표시·설치 기간은 15일 이내로 할 것. 이 경우 표시·설치일은 표시기간의 계산 일수에 산입한다.
  3. 현수막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할 것
- 가. 정당의 명칭
- 나. 정당의 연락처
- 다. 설치업체의 연락처
- 라. 표시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4. 현수막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표시·설치할 것

가. 글자의 크기는 세로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나. 다른 자가 설치한 현수막, 「도로교통법」에 따른 신호기·안전표지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가리지 않을 것

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를 가로지르지 않을 것

라.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전봇대 또는 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2개 이내로 설치할 것

마.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 현수막 본체에 부착되어 있는 아랫 부분 끈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1)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장소

2)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장소

3)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장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수막 표시·설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4. 1. 12.]

## 붙임 2

## 정당현수막 관리 참고 자료

자료 : 행정안전부

## 참고 1

## 옥외광고물법 개정 전후 비교

| 구분    | 현행   | 개정  |
|-------|--|---|
| 원칙    | ▶ 정당현수막은 신고를 거치지 않고, 장소 제한 없이 설치 가능                              | <좌 동>   |
| 제한 사항 | 개수<br>▶ 제한 없음  | <p>&lt;신 설&gt;</p> <p>▶ 읍면동별 2개 이하로만 설치</p> <p>※ 단, 면적이 100km<sup>2</sup> 이상인 읍면동에는 추가로 1개의 현수막 설치 가능</p> |
|       | 장소<br>▶ 제한 없음  | <p>&lt;신 설&gt;</p> <p>▶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 저해 장소(대통령령으로 위임) 외의 장소에만 설치</p>                                     |
|       | 표시 방법<br>▶ 대통령령*으로 위임<br>* 정당 현수막에 정당 명칭, 정당·설치 업체 연락처, 표시기간을 기입 | <좌 동>   |
|       | 표시 기간<br>▶ 대통령령*으로 위임<br>* 표시기간 15일                              |   |
|       | 그 외<br>▶ 제한 없음   | <p>&lt;신 설&gt;</p> <p>▶ 규격 등 그 외 표시·설치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p> <p>▶ 표시기간(15일) 경과시 현수막을 표시·설치한 자가 자진철거</p>         |
| 행정 조치 | ▶ 별도 규정 없음   | <p>&lt;신 설&gt;</p> <p>▶ 정당 현수막 허용범위 위반시 철거등 조치 가능</p>   |

## 참고 2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설치금지 장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한 없음</li> <li>※ 다만, 법 제5조(금지광고물 등)에 따라 교통수단의 안전, 이용자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설치 금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어린이보호구역</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 준용,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li> </ul> </li> <li><u>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 금지표시 구간</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 준용</li> </ul> </li> </ul>   |
| 규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한 없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0㎡ 이내</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 제1항 준용</li> </ul> </li> </ul>   |
| 표시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5일 이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현행과 같음</u></li> <li><u>시작일을 표시기간에 포함, 시작일·종료일 병기</u></li> </ul>   |
| 표시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당명, 연락처, 표시기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현행과 같음</u></li> <li><u>글씨 크기 제한(세로 5cm 이상)</u></li> </ul>   |
| 설치방법 (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한 없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다른 현수막, 신호등·안전표지, CCTV를 가리는 방법</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 제4항 제2호 준용</li> </ul> </li> <li><u>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 제4항 제3호 준용</li> </ul> </li> <li><u>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가로등·전봇대에 현수막 2개를 초과하여 설치</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관위(서울) 기준 준용</li> </ul> </li> <li><u>보행자 통행 또는 차량 운전자 시야 방해 우려 장소 (교차로(5m 이내), 횡단보도(10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에서 현수막 아랫 부분 높이가 2.5m 이상,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 높이가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교통법 제32조 제2호~제5호, 도로법 제50조·제52조 준용</li> </ul> </li> </ul>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한 없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그 외 현수막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사항은 행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의 범위, 관련 사례 등 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 내용 규정(정당현수막 가이드라인 중심)</li> </ul> </li> </ul>   |

### 참고 3

## 개정 법령에 따른 정당현수막 설치금지 및 제한장소 등 예시

### □ 정당현수막 설치금지장소

#### ①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 ② 도로교통법에 따른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 금지표시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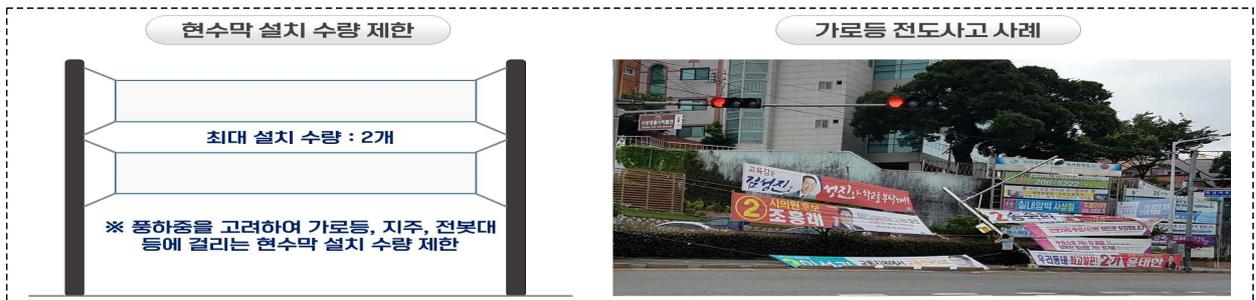


## □ 정당현수막 표시방법



## □ 정당현수막 설치방법

### ① 현수막 설치수량 제한(2개 이내 설치)



### ② 현수막 설치높이 제한(현수막 본체 아랫 부분 높이 2.5m 이상 설치)



#### 현수막 설치 높이 제한장소(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